

2019-2학기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 수강신청 안내

대학원에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중 하나인 외국어시험 자격종족 여부와 관련하여 공인어학성적 (TOEFL, TOEIC 등) 외에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과목을 정상 이수하는 경우도 외국어시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며 금번학기부터 외국어시험 대체영어과목(수업)의 운영방식이 변경되오니 **다음 페이지의 외국어시험 대체영어과목(수업) 운영 변경 안내문** 을 참고하시어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가. 개설과목

학과	과목명	교수	학점/시간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인원
공통	영어	문승재	0/3	월 18:30 ~ 21:30 (종합관 105호)	40명

나. 신청기간 : 2019.8.6(화) ~ 8.12(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수강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AIMS2포탈→ Login→ 학사(대학원)→ 교과수업→ 수강신청(공통/영어 선택)

* 수료생의 경우 AIMS2포탈에서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대학원교학팀으로 수강신청 요청

2. 신청대상 :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단, 휴학생 및 아래 약학과 재학생 제외](#))

[\(2012학년도 9월~2018년 9월 입학한 약학과 학생은 영어 대체과목 인정이 안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성적평가: PASS & FAIL(0학점)

* 외국어 대체과목 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용도로써 당해학기 정규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음.

4. 수강료 납부

가. 수 강 료: 120,000원/학기

나. 납부기간: 2019.8.6(화) ~ 8.12(월) -> 수강신청기간과 동일

다. 납부방법: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632-15-000373 (예금주: 아주대 일반대학원)

5. 유의사항

- 수강신청기간 내 본인 이름 및 학과 기재 후 이체(예: 흥길동 기계)
- 수강신청기간 내 상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취소로 간주하여 별도의 개인의사 확인 절차 없이 자동 취소됨.
- 수강신청취소 : 대학원교학팀으로 수강정정기간(2019.9.5.(목)~9(월)) 이내에 수강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수강료는 전액 환불됨. 이후 수강취소/환불 불가함.
- 매 학기 개설되며, 금 학기 미 수강 시 차후 학기 수강 가능.

외국어시험 대체영어과목(수업) 운영 변경 안내문

1. 신청대상: 일반대학원 소속 재학생, 수료생 (단, 휴학생 제외)

(단, 2012학년도 9월~2018년 9월 입학한 약학과 학생은 영어 대체과목 인정이 안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제외대상자 : 외국어시험 합격자, 공인어학성적으로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은 자

2. 운영 변경 사항

변경 전 (2019-1학기 까지)	변경 후(2019-2학기부터)
<p>2011-1학기 이전 입학생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학기 실시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점수에 따른 반 편성(초급반 2개, 중급반 1개)- 초급반, 중급반 수준별 수업 실시- 대학원 외국어시험 미응시 학생은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초급반에 편성됨- 초급반, 중급반 관계없이 한 학기를 이수하고 패스할 경우 영어 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p>2011-2학기 이후 입학생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학기 실시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점수에 따른 반 편성(초급반 2개, 중급반 1개)- 초급반, 중급반 수준별 수업 실시-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초급반으로 편성되는 학생의 경우 한 학기는 초급반, 한 학기는 중급반 총 2개 학기를 이수하고 각 반에서 패스할 경우에 한해 영어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중급반으로 편성되는 학생의 경우 한 학기 중급반만 이수하고 패스할 경우 영어 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대학원 외국어시험 미응시 학생은 영어실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초급반에 편성되며 한 학기는 초급반, 한 학기는 중급반 총 2개 학기를 이수하고 각 반에서 패스할 경우에 한해 영어 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3. 운영 변경에 따른 외국어시험 대체과목 수강대상자 안내

구분	변경 전 (2019-1학기까지 이수 기준)	변경 후 (2019-2학기부터)
영어(초급) 및 영어(중급) 모두 이수대상자	영어(초급) 및 영어(중급) 모두 이수한 자	영어 이수 의무 없음
	영어(초급)만 이수한 자	영어 이수
	두 과목 모두 미 이수자	영어 이수
영어(중급) 이수 대상자	영어(중급) 이수한 자	영어 이수 의무 없음
	영어(중급) 미 이수자	영어 이수

※ 대학원 주관 외국어시험 합격자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을 통하여 외국어면제가 된 학생은 수강 대상자가 아님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 1)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을 패스한 자(석사 60점, 박사 및 통합 70점 이상 취득한 자)
- 2) 공인 어학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TOEFL, TOEIC, TEPS 등 일정점수 이상 취득한 자)

가) 면제기준

(1) 영어: TOEFL PBT 534점(CBT 200점, iBT 72점) 이상, TOEIC 730점 이상, TEPS 605점 이상, IELTS 6.0 이상,
TOEIC Speaking Level5 이상, OPIc IL 이상 취득자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2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 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공히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3)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을 수강하여 Pass한 자

* 상기 조건 중 (1) 또는 (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수업) 수강 대상자가 아님.